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법인MMF1호(국공채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고유재산 투자금액 변경(최대 500억 → 1,000억) -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효 력 발 생 일	2023년 10월 27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	최근 결산기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

주이(연평균수익률)	재무제표 확정		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3.10.27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고유재산 투자금액 변경(최대 500억 → 1,000억)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문구 조정	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	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

		<p>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0.0578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2.09.01</u>)</p>	<p>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0.1746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3.09.01</u>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1) ~ 2)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</p>	<p>1) ~ 2) (현행과 동일)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</p> <p>(1) 회사의 개요</p> <p>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 22층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aitas.com</u></p> <p>(2) (생략)</p> <p>다. ~ 라. (생략)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</p> <p>(1) 회사의 개요</p> <p>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fundpartners.com</u></p> <p>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</p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	고유재산 투자금액 변경(최대 500억 → 1,000억)	투자금액: 최대 <u>500억</u> 을 한도로 회사 유동성자금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	투자금액: 최대 <u>1,000억</u> 을 한도로 회사 유동성자금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<끝>.